

대전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1나112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1나1120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합10112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범준

변론 종결 2021. 6. 9.

판결 선고 2021. 7. 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29. 선고 2020가합1011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269,955,26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955,269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20. 2. 13.까지로 연장되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을 제13,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9. 1.말경 및 2019. 3.말경 퇴직한 직원들 10명에 대하여 1억 원 정도의 퇴직금채무와 적지 않은 액수의 체불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그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17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2019. 1.말경 및 2019. 3.말경 퇴직한 직원들 10명에 대하여 1억 원 정도의 퇴직금채무와 적지 않은 액수의 체불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이 그 대표이사 K에게 적어도 116,5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 피고에게 적어도 18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1) 위 750,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로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공제(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2021. 6. 4.자 준비서면). 앞서 본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이와

같은 퇴직금채무, 체불임금채무, 각 차용금채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유일한 재산과 다를 바 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매매대금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채무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B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그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아니하는 점" 뒤에 ", B은 H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지도 않은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의 "을 제1, 8호증"을 "을 제1, 8, 9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 8, 9호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관한 자료가 아닌 데다, B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재고자산 등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B의 적극재산이 그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B의 2018.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을 제1호증)에 의하면 당시 B의 재고자산은 원재료 1,031,560원에 불과하다. ② B이 2019. 10.경 전선, 선풍기, 선파 등 중고거래를 제안한 온라인 게시글(을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물품들의 가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③ B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장부에 기재된 비품, 공구, 기구의 사용기간에 비례하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품 등의 가액은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밑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매매대금을 사업추진 및 자금유통의 목적으로 지출하여 변제자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유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유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고자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2019. 1. 16. 직원 12명에게 급여를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였는데, 그 중 10명이 그 무렵(2019. 1.말경 9명, 2019. 3.말경 1명) 퇴직하였다. 2019. 2.부터는 B의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공장 겸 창고로서 B의 유일한 사업장이었고, 이를 매각할 경우 B은 사업을 계속 유지할 마땅한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부터 B의 계좌에 물품대금 등의 매출채권이 특별히 입금된 내역이 없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얼마 뒤인 2019. 10.경 재고, 비품, 기구 등의 대부분을 판매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이는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238,897,808원 중 116,500,000원을 그 대표이사인 K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퇴직 직원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에는 14,000,000원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2021. 6. 4.자 준비서면). 이러한 매매대금 사용은 B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5,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B과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2) 를 맺으면서 B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피고는 2015. 2. 25.에 100,000,000원, 2017. 8. 22.에 90,000,000원을 B에 송금하였다. ② 피고는 2019.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 토지들을 B으로부터 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B에는 그 토지들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340,000,000원만 직접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2019. 6. 18. B의 사업장인 이 사건 각 부동산마저 대금 750,000,000원에 매수(이 사건 매매계약)하면서, 약 330,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고, B에는 앞서 본 238,897,808원만 직접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2019. 7. 25. B의 국세와 관련하여 25,183,790원을 지출하였다. ⑤ 피고는 2019. 10. 7. B으로부터 G K9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B 소유의 재고, 비품, 기구 등을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준명

판사임현태

판사백승준

별지

- 1) 다만,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18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는 2015. 2. 25. 및 2017. 8. 22.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차용증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9. 1. 29.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근의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차용금채무와 매매대금채무를 상계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180,000,000원도 B의 차용금채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피고가 차용금채무 전부를 상계처리하지 않은 채 B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이다. 위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염가에 처분한 셈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2) B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0.경에는 B의 사외이사로, 2017. 4.경에는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